

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치영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생활체육의 활성화, 나아가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○ 2022년 6월 16일 시행된 「스포츠클럽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)

○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6조)

○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7조)

○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규정함(안 제9조)

- 체육시설 및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대한 위탁을 규정함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,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「스포츠클럽법」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스포츠클럽법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, 안 제5조에서 「스포츠클럽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스포츠클럽법

제5조(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안 제6조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,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,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보조 등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안 제7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,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,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등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.
- 안 제9조에서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, 안 제10조에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과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음.
-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스포츠클럽법」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5일 제정되었음.
 - 「스포츠클럽법」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이후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이 2022년 6월 15일 제정되었음.
- 반면, 충청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「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」는 2021년 8월 6일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로 개정 작업을 거치지 않아 2022년 6월 15일 제정된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.
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른 전문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,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 및 도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